

# 카드뉴스 [제23-16호]

산학협력단의 연구행정 정보를  
쉽고! 편리하게! 전달해 드려요.



##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점검 안내

- ▶ 우리 대학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를 “연구책임자 단위” 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▶ 계정책임자께서는 12월말 기준으로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%가 넘도록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란?

전년도 계정 잔액과 당해연도 계정 수입액 대비 당해연도 학생인건비 지급금액 비율을 의미합니다.

**점검기준** 12월말 기준 60% 이상 되어야 통합관리기관 유지

**1회 위반시** 연구책임자단위 → 연구개발기관단위\*로 관리체계 변경  
\* 책임자단위 + 학과,연구소 등 기관단위 동시 운영

**2회 위반시**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→ 종료과제 잔액은 즉시 반납

## [참고] 본교 학생인건비 계상기준

(23.3.1.상향 개정)

|           |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-|
| 학사과정      | 1,300,000원 | ※ 학·석사 통합과정은 7학기까지는 학사과정으로,<br>8학기부터는 석사과정으로 간주 |
| 석사과정      | 2,200,000원 |   |
| 박사과정      | 3,000,000원 |   |
| 석·박사 통합과정 | 3,000,000원 |   |



### 주의사항

본교 외 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본교 계상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
## ‘학생인건비부당회수’ 금지 안내

- ▶ 학생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“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” **엄격히 금지**되어 있습니다.
- ▶ 연구자분들께서는 아래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사례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#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사례

- 1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연구실 운영경비, 워크숍 비용, 학회참가비 등으로 사용  
→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학생들에게 재지급하여도 ‘학생인건비부당회수’에 해당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2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학생인건비 변경  
→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반드시 상호 협의 하에 학생인건비를 변경해야 합니다.
- 3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인건비를 늦게 지급  
→ 학생인건비 계정의 잔액을 활용하여 지급해 주시고 학기/학년 단위로 적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처 : 산학연구지원부 학생인건비 담당자 이창민

☎ 033-250-8285    ✉ leecm@kangwon.ac.kr

산학협력단에서는 원활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 및 응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